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-015호

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

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
「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에 따라
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8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「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
원금 상한액은 33만원으로 한다.